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36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 김성주·남인순·강선우

최혜영 · 정춘숙 · 이탄희

고영인 · 황운하 · 김승원

김경만 · 김홍걸 · 권칠승

민홍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범위 유족에게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 이 내의 범위에서 부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가입자와 달리 사망일시금이 지급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 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 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0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라"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를 "그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2. 노령연금 수급권자
-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

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이 3급이상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사망일시금) ① <u>가입자 또</u>	제80조(사망일시금) ① <u>다음 각</u>
<u>는 가입자였던 자가</u> 사망한 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	람이
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	
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u>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u>
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	<u>하나에 해당하는</u>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	
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	
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	
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	
를 말한다) <u>가입자 또는 가입</u>	
<u>자였던 사람에</u> 의하여 생계를	<u>그</u> 에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	
급한다.	

<신 설>

<u><신</u>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 람
- 2. 노령연금 수급권자
-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 연금 수급권자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 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신 설> 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 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 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 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 는 가입자였던 자"는 "노령 연금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의 수급권 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 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